

대구·경북지역 창업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, (주)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, 와이앤아처(주), 대구대 창업지원단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대구경북지역 창업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발전증진에 공헌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, (주)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, 와이앤아처(주), 대구대 창업지원단의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5개 기관의 발전과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5개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5개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.

1. 지역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 및 관련기관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
3. 기업 정보교류 활성화 및 기술정보 제공
4. 기타 지역 청년창업·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

제4조(비밀유지) 5개 기관은 상호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 5개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5개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제6조(해지 및 유효기한)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5개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
3.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당해 협약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.
4. 유효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초 2년으로 하고,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 체결 후 세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제8조(협약 변경) 본 협약서의 내용은 5개 기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단, 협약의 변경은 세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,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, 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5개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, (주)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, 와이엔아처(주), 대구대 창업지원단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7월 15일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
대구대로 201

경북 구미시 구미대로
350-27

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
51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



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

단장 이 재 현

센터장 이 경 식

센터장 이 재 일

대 이미령

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,
102

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,
2동 9층 909호



(주)대경기술지주

Y&ARCHER

대표이사 김 현 우

대표 신 진 오

김현우

신진오